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2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3. 6. 27(목) 16:0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경재 위 원 장
김충식 부위원장
홍성규 상임위원
김대희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양문석 상임위원 (1인)

제2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6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박노익 기획총괄담당관

-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양문석 위원께서는 세미나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2. 국민의례

○ 박노익 기획총괄담당관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경재 위원장

- 2013년 제2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회의록 확인

○ 이경재 위원장

- 지난 제24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경재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1건이 모두 공개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주민번호 수집·이용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13-25-061)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주민번호 수집·이용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이용자정책국장은 안건과 행정처분 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이용자정책국장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주민번호 수집·이용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인터넷에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개요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인터넷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금년 2월 18일부터 주민번호의 신규 수집·이용이 법령상 금지됨에 따라 주요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대상은 일 평균 방문자수 1만명 이상인 웹사이트 1,080개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말 현재, 민간 웹사이트 방문자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각 분야별 1만명 이상 방문자수 웹사이트는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및 위법성 판단입니다. 금년 4월말 기준으로 37개사의 44개 웹사이트(전체 조사대상 1,080개의 4%)가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만, 금년 6월 27일 오늘 현재 (주)아이엠아이의 itemmania.com이라는 1개 웹사이트만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6개사의 43개 웹사이트는 지난 5월 24일 행정처분(안) 사전통지 후에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자들은 이에 대해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한 것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있으며, 웹사이트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불가피하게 처리가 늦어졌고 일부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였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보내 왔습니다. 행정처분(안)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한 행위는 동법 제64조제4항의 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76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행정처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망법 제23조의2제1항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64조제4항의 시정조치와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먼저 오늘 현재 망법을 위반하여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있는 (주)아이엠아이에 대해서는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명하고, 금년 2월 개정 시행된 망법의 해당 규정에 의한 최초의 위반사례인 점을 고려하여 동법 시행령 제74

조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
 입니다. 다음으로 조사 당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여 망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
 니다만 오늘 현재 개선을 완료한 NHN 등 3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이미 시정하
 였으므로 시정조치 대신 향후 재발방지에 노력하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방안을 건의드립니
 다. 한편 개선을 완료한 36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는 방통위원회가 논의하여 결
 정할 사항입니다만 '09년 3월 방통위에서 의결한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 제5조의 규정을 고려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
 다.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에서는 개인정보 유·노출이 없는
 경우, 최근 3년간 개인정보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경우, 천재지변, 단순
 과실로 발생한 경미한 위반의 경우 등 2개 이상 사유에 해당되면 과태료 대신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36개 위반사업자의 경우에는 모두 동 규정의 내용에
 해당되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이용자정책국의 행정
 처분(안)을 말씀드렸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기본적으로 보고한 처분 내용에는 동의하는데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예기간이 상당
 기간 있었지요?

○ 정종기 이용자정책국장

- 6개월입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조금 전에 보고에서 제법 큰 회사가 4%를 위반했다는 주장이지요?

○ 정종기 이용자정책국장

- 예.

○ 홍성규 상임위원

- 문제는 이제 중소 웹사이트를 조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소 웹사이트는 아마도 이
 보다 훨씬 많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중소 웹사이트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똑같이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못하면 불법사이트들을 양산해 내는 결과가 나옵니다.
 아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많은
 4%의 위반율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것과 별개로 중소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나 계도의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위반자
 를 잡아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잘 되게 하는 데 우리의 정책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
 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
 것이 대부분 지방에 많을 텐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서울이 많습니까, 지방이 많습니까?

○ 김정렬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서울 쪽이 많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지방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 김정렬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저희가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서울과 지방을 비교하면 7:3, 8:2 정도 된다는데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이런 중소 웹사이트들은 지방에도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방조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 김정렬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기본적으로는 큰 업체였기 때문에 시스템이 복잡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현장점검도 많이 하고, 작은 데는 인터넷을 모니터링해서 주민번호 수집창을 현재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가장 조사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부분의 대부분은 인터넷상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이번에 해 보면 알겠지만 혹시 효율적인 조사나 계도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조직의 필요성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할 것인지 그런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정종기 이용자정책국장

- 먼저 두 번째 말씀하신 지방 기업에 대한 조사 문제는 미래부 중앙전과관리소에 지방사무소가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방통위 소속으로 있다가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미래부로 갔습니다만 그 인력과 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협력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 기업이나 조사 대상에 대해서도 빠지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주민번호 금지 부분에 대한 홍보, 계도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상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 일 평균 방문자수 1만명 이상에 대한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자가 약 1,000여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일 평균 방문자수가 1만명 미만인 웹사이트가 몇 개가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KISA의 추정치에 약 15만개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약 7만개 정도는 소위 웹호스팅사라고 해서 홈페이지 등을 구축해서 관리해 주는 전담회사가 있는데 이곳에서 관리하는 웹사이트가 약 7만개가 되기 때문에 웹호스팅사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조사를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니터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위반사실이 없도록 계도해 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웹호스팅사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웹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는 아주

영세한 사업자가 약 8만개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만개 중에서 전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중에서 약 3만개 정도 기술적인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약 1만 3,000개, 내년에 1만 7,000개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해서 전문기술인력을 용역으로 확보해서 기술적으로 지원해 가면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법을 위반하는 일이 적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개인정보보호라는 큰 목표를 이루려면 큰 회사보다는 작은 회사, 중소기업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면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김대회 상임위원**

-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사업자 의견'이라고 해서 주민번호 수집·이용에 대해 자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아이엠아이만의 일은 아니지요?

○ **정종기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대회 상임위원**

- (주)아이엠아이는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까지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고….

○ **정종기 이용자정책국장**

- 우리가 조사를 3월에 시작해서 결국은 (주)아이엠아이에게 법령위반의 사실을 인지시킨 지 한 3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회원이 약 800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시스템이 옛날에 작은 것부터 계속 누적해서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면 되는지 그쪽 의견도 들어보고 우리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봤을 때 한 2개월 정도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 생각에 8월까지는 모두 완료하도록 지도해 가겠습니다. 만약에 그때까지도 안 되면 재처분을 해서 보다 강하게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 **김대회 상임위원**

- 그렇다면 다행이고, 어쨌든 홍보며 이런 인식의 전환이 먼저 앞서야 하기 때문에 일단 방통위에서 이렇게 조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해야겠다는 것을 인식시킨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실무국의 의견에 찬성하고, 일단 (주)아이엠아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처분해야겠지만 나머지 사업자들에게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없이 그냥 권고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방송시장 모니터링 시범운영 결과 및 향후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 이경제 위원장

- <보고사항 가> ‘방송시장 모니터링 시범운영 결과 및 향후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방송시장 모니터링 시범운영 결과 및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유입니다. 방송시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자 간 불공정행위와 시청자 이익 저해행위를 신속하게 진단하고 필요시 제재하기 위한 방송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사업에 대한 시범운영 결과를 오늘 보고드리고, 이를 보완한 향후 발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방송법과 IPTV법, 미디어랩 등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의 목적은 보고사유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적절한 적시적 조사와 시정조치를 하고자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자는 말씀드린 법상의 해당 사업자들이 되겠습니다. 주요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3년 2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방송시장모니터링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동 모니터링 센터에서 금년 5월까지 「방송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고, 시범 운영 결과를 오늘 보고드립니다만 종전에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전화 모니터링 외에 온라인 모니터링도 분석대상에 추가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범운영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모니터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화 모니터링은 주로 유료방송사가 제공하는 경제적인 이익제공 수준과 시청자 권익 침해행위 등에 대해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유·무선 전화수단을 통해 모니터링을 했고 그 모니터링한 내용을 격주 단위로 상황분석을 했습니다. 해당되는 방송사는 SO 92개사 등 총 96개 방송사업자가 되겠습니다. SO의 77개 방송권역별로 모니터링한 사항을 분석해서 향후의 경쟁과열 권역을 선별하는 등에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이익제공’의 지급 형태와 규모에 대해 전화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방송사의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형태를 분석했는데 총 6,700여건의 표본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그 분석결과, IPTV와 위성은 경제적 이익제공으로 주로 현금과 유가증권을 지급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했고, SO는 요금할인이라는 방식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형태를 보여 왔습니다. 각 플랫폼별 가입자 유치에 사용하는 경제적 이익제공에 대한 내용은 <그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이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경제적 이익제공에 관한 공통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보고드린 대로 요금할인이나 현금, 유가증권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방송 부문에 있어서는 결합상품에서의 방송요금에 대한 지급규모, 즉 회계분리에 따른 원가분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 이익제공에 관한 공통기준

마련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금제도 IPTV는 정액요금제로 운영되고 있고, SO와 위성은 상한요금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 설정, 또는 공통기준 설정이 더욱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 모니터링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플랫폼의 홈페이지상의 약관이나 정보제공 수준 등을 분석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홈페이지 제공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나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총 96개사의 홈페이지를 분석했는데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내용으로 요금정보를 표기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별로 서비스별로 요금표기나 할인방법이 다르고 복잡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고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비교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단편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MSO의 경우 홈페이지 화면상에 본사의 요금만 명시하고 소속 계열사 SO의 요금을 누락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약관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각 사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이를 어떻게 개선할지 방향에 대한 개선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2가지가 시범 운영 결과였고, 향후에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서면 모니터링과 심층인터뷰도 함께 실시하고자 합니다. 앞서 2가지의 모니터링 방식, 즉 전화와 온라인 모니터링은 주로 이용자 측면의 불이익 행위를 분석하는 데에는 상당히 유효하고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간 불공정행위에 대한 분석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모니터링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수신료에 대한 일방적 삭감이나 수익배분에 대한 계약이행을 거부한다는 것과 같은 사업자 간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서면 모니터링과 심층인터뷰를 통한 불공정 행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연구반」을 운영해 왔습니다. 주로 학계, 업계, 법률가로 구성이 됐는데 이 전문가들로 운영해서 시장현황과 사례 검토를 통해 서면으로 조사할 경우 조사항목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료 방송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정기 서면 모니터링 외에 주요 현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현안을 중심으로 한 「기획 서면 모니터링」도 하고 「심층인터뷰」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 서면 모니터링」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시범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내용에서 대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SO, 먼저 경제적 이익 제공과 관련해서는 유료 플랫폼 간의 요금승인 제도가 차이가 있고, 또 마케팅을 하는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일반적인 공통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매체나 지역별로 경쟁과 열에 대한 판정을 하기 위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통신시장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차별기준이나 관련사례도 참고해서 방송시장에서의 독자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야겠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이용약관의 편의성 수준에 대한 품질평가를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보고드린 대로 유료방송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와 약관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가 접근하거나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품질평가를 마련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이러한 품질평가는 강제적인 방식보다는 각사가 제공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모범 사례'와 '개선이 필요한 사례' 등을 공개해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품질향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코자 합니다. 또한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약관에 대해 '알기 쉬운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코

자 합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즉 수준 품질평가 등을 위해 관련된 연구반을 7월 중에 구성·운영하고, '13년 중에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방송시장 실태 점검과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방송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주요 개선방향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지금 방송시장이 갈수록 혼탁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케이블TV는 쇠락세에 있고 또 IPTV나 위성방송이 약진세에 있는 상황에서, 또 방송법상 금지행위도 우리 방통위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처리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에 결합상품 내에서의 공통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OTS라고 할 경우 KT의 OTS상품 안에 전화와 위성, IPTV, 이렇게 되어 있지요?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러면 자기들이 요금표를 내밀 때 그 안에는 방송이 얼마다, 전화가 얼마다 이렇게 구별되어 있던데...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사업자들이 자의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을 구성하는 원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데 현재 저희들이 단순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만 있지, 그 원가와 관련된 회계분리에 따른 정확한 검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한 경제적 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래서 사무국이 고민하는 것처럼, 어차피 방송시장은 과열경쟁으로 치달아가고 신문이 쇠락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주 엄청난 싸움들을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금지행위 처벌에 대한 부담으로 고스란히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일정표에서 고민하는 것처럼 결합상품 내에서의 원가 비중에 대해, 굉장히 치밀하고 정교한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무국이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 더 지적하고

싫은 것은 지금 요금이 정액제가 있고 상한제가 있는데 애초에 이 요금이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공통기준 적용이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래부와 협조해서 요금제를 바꿀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요금 규제 체계의 일원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동안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말씀하신 대로 요금제의 이러한 첫 출발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SO는 상한 요금제로 출발했고, IPTV는 유추컨대 정액요금제가 사실상 하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한 생각이 있지 않았나 유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금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원화해서 하면 공통기준 마련하기도 편하고 그런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동안에 방통위로 같이 있을 때 이러한 공통의 부분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 2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논의가 시작됐는데 개선까지는 못 갔던 것 같고, 지적하신 대로 지금부터라도 요금제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부와 협의를 해서 일원화하는 개선방향이 어떤지를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공통기준 마련이 보고드린 대로 이러한 요금제만의 문제는 아니다, 요금제가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 외에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회계분리, 원가구조분석 부분까지 함께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고, 홍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유념해서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 점은 미래부와 협조해야 할 것이고, 앞에 <의결사항>에서 있었던 주민등록 번호 수집·이용 등에 관해서도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송이야 말로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전국 조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예.

○ 홍성규 상임위원

- 모니터링을 강화하는데 미래부 조직을 활용합니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한국전파통신진흥원 내 모니터링센터에 모니터링 요원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 홍성규 상임위원

- 제가 오픈 할 때 갔었습니다. 몇 명 데리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많이 부족하지요.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예, 맞습니다. 그나마 아쉬운 대로 그 모니터링 인력과 이 시스템을 통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커버하고 있는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지방이나 지사 조직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현재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업무 위탁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현재 우리가 미래부와 방통위와 분리되면서 우리가 지방조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벌써 오늘도 2건 다 그런 것이 걸리는데 앞으로 이것 말고도 그런 일이 꽤 있을 것 같으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적된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상 전국적으로 조사하는 업무를 주면서도 실제 조사할 기구는 없고, 그렇지 않아도 운영과장이 늘 문제제기하는데, 기획조정실장이 조금 이따 인사하러 올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조직을 전반적으로 손질해서 이번에 기계적으로 넣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인원 문제들을 확장하는 데 해결이 안 되는데 조직정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를 앞으로 함께 각 부서별로 조직개편과 관련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이경재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날짜는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경재 위원장**

- 이상으로 제25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시 35분 폐회 】